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202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 | |
|----------------------------|-------------|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1. 8 | 고 성 군 수 |
| 나. 회부일자 : 2010. 1. 8 | |
| 다. 상정·의결일자 : 2010. 1. 13 | 총무위원회 상정·의결 |

2. 개정이유

생명환경농업연구소(사업소)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의 대강을 정하며, 기타 부서간 업무이관, 업무신설과 관련하여 관련 실·과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주민생활과장의 분장사무 중 120만원기동대 운영, 상조민원, 농어촌 보안등·가로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특구지원과로 이관(안 제3조 제2항제2호, 제13호)
- 나. 행정과장의 분장사무에 공룡나라쇼핑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3조 제2항제3호)
- 다. 종합민원실장의 분장사무에 새주소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3조제2항제5호)
- 라. 조례안 제13조(소관사무)에 제4호 신설 (안 제13조)
 - “4. 생명환경농업연구소”로 하고, 아래 소관사무로
 - “가. 생명환경농업관련 기획, 교육지원, 자재연구에 관한사항”
 - “나. 생명환경농업 홍보,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함.
- 마. “별표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2009. 12. 23 ~ 2010. 1. 2(10일간)

나.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다. 예산조치 :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경상남도의 사업소 설치 협의 승인(2009. 11. 13)에 따라 생명환경농업 업무를 총괄 할 사업소를 신설하고, 그 소관 업무의 대강을 정하고, 기타 부서간 업무 이관과 신설 업무를 분장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주민생활과의 120 민원기동대 운영 등 관련 사무를 특구지원과로 이관하고, 행정과에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사무와 종합민원실에 새주소 업무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여 조정하였으며
- 사업소 소관 사무로 생명환경농업연구소에 생명환경농업과 관련한 기획, 교육지원, 자재연구에 관한 사항, 생명환경 농업홍보, 시설관리에 관한사항을 신설하였으며
- 별표2의 신설 사업소의 명칭을 생명환경농업연구소로 하고, 그 위치를 고성군 고성읍 덕선리 586번지에 소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고성군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를 기능 중심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설되는 기구 및 담당업무에 대한 당위성과 적정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6. 질의 및 답변 요지

- 문 : 생명환경농업연구소에 투자 할 사업비가 87억 원 정도이고 금년도에 국비 2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음. 정원이 늘어나지 않은 사항인데 현재의 농업기술 센터 조직으로도 생명환경농업을 계속 할 수 있는데 많은 사업비와 신규 추가되는 정원등을 고려 할 때, 생명환경농업연구소의 신규 설치가 꼭 필요한가?

- ◉ 답 : 금년도 생명환경농업으로 벼 재배를 1천 헥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원예, 축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연구소를 다녀간 교육생과 농업인이 3,4천명이 되고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생명환경농업의 정확한 연구와 교육, 홍보, 자재연구, 확대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입니다.
- 문 : 생명환경농업의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과 인원을 확보하고 배치해야 하며, 최종 목표가 대한민국의 농산물을 안전한 먹거리로 생산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확산 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사업은 국가나 도에서 해야지 우리 지자체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고성의 미래를 생각해서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람.
- ◉ 답 : 국민의 건강에 기여하는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며 우선 우리 군민의 소득창출과 직결되는 부분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해서 국비 등을 일부 지원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토 론 :

8. 심사결과 :

- 2010. 1. 13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